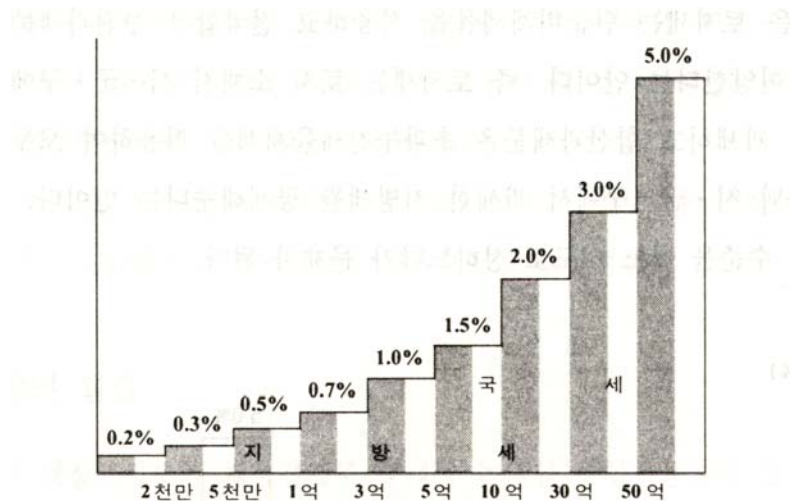




[그림 3] 제3안의 과세 방법 (종합합산의 경우)

이상의 세 가지 종합토지세 이원화 방안들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각종 재정효과에 관한 시산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.

2. 과표 인상에 따른 서울시 종합토지세 세수 추정(현행 제도 유지)

각 방안별 시산에 앞서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계획에 근거하여 현 종합토지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세수를 추계해보고자 한다. 여기서 계산된 종합토지세 세수는 각 방안별 종합부동산세(국세) 과세액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.

2003년의 서울시 종합토지세 부과 자료를 통해 파악한 세액 단계별 납세 인원은 <표 3>에 나타난 바와 같다. 2003년 현재 서울시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자는 총 2,271,149명이며, 총 세액은 약 5,4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는 인원으로는 전체의 74.8%(1,699,720명)를 차지하는 반면 세액은 전체의 11.8%(642억여원)에 불과하다. 한편 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납세자는 인원으로는 1.9%(43,751명)에 불과하나 세액으로는 전체의 64.3%(3,500여억원)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